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27호

2022년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3월 31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계획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요청부서]	직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週근무시간)	직무내용	비고
관리의사 [수지구보건소]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1년 (주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혈압, 당뇨 약 처방 등 일차진료■ 각종 검사 및 진단서 발급 등■ 예방접종 예진 및 감염관리 업무 (검체채취, 확진자 관리, 역학조사 등)■ 건강증진업무 지도 등 관리의사 업무	
일반의사 [기흥구보건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명	1년 (주3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과 일반진료■ 건강상담, 예진 등 보건사업 추진	
협치·소통 [시민소통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소통·협치 정책 구축■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운영 및 관련 업무■ 각종 민원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협치과제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 공론장 기획·운영 지원■ 협치백서 발간 지원■ 수집·분석된 자료를 통한 시정정책 반영 방안 마련	
산업안전관리 [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2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처리■ 산업안전관리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업무■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채용분야 [요청부서]	직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週근무시간)	직무내용	비고
사회조사분석 및 공모사업운영 [도시청결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채용일~1년 ※ 연장불가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회(통계) 조사분석 ■ 생활폐기물 감량 분야 '주민제안공모사업' 운영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마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 지원 ■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국가공모사업 추진 ■ 주민역량 강화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 맞춤형 공모 및 협업사업 발굴 ■ 주민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산업보건관리 [행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보건체계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처리 ■ 근로자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 업무 ■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농기계관리 [기술지원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채용일~1년 ※ 연장불가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 농기계 정비 및 수리 ■ 농기계 안전교육 및 교육·훈련장비 관리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서부도서관]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디지털창작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교육 ■ 메이커교육 성과 공유(홈페이지 운영, 작품 전시 등) <p>※ 근무요일 : 화요일 ~ 토요일</p>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기획, 운영 및 지원 ■ 용인시 평생학습관 정기 및 수시교육 운영 ■ 용인시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용인시 평생학습관 장애인 제과제빵 운영 ■ 평생학습 플리마켓 운영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관리 ■ 그 밖에 평생교육 관련 사업 추진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대중교통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민원 접수 및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단속 및 처분 ■ 구난차량(레커차) 부당요금 처리 ■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 골재 운반 단속 ■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른 처분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처분 ■ 유관기관 협동점검 	

채용분야 [요청부서]	직급	선발 인원	근무기간 (週근무시간)	직무내용	비고
영양사 [처인구보건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생활실천(영양) ■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정보실 운영 ■ 기타 보건업무(코로나19 대응 등) 	
운동처방사 [기흥구보건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 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사업실 운영 및 운동처방·상담·지도 - 지역주민 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교육 - 체성분 검사 및 상담 ■ 아동비만 예방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 기타 보건업무(코로나19 대응 등) 	
간호사 [기흥구보건소]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명	1년 (주3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상담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예방 인식개선 ■ 기타 보건업무 추진 	

2.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주소지 : 제한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채용분야
20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관리의사, 일반의사, 협치·소통, 산업안전관리, 사회조사분석 및 공모사업운영, 도시재생
18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자	산업보건관리, 농기계관리, 메이커스페이스운영, 평생교육사, 화물자동차불법행위단속,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무분야	자격기준
관리의사 [수지구보건소]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필수 자격요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p> <p>○ 관련분야(경력)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 보건교육 등 관련 경력</p>

직무분야	자격 기준
일반의사 [기흥구보건소]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필수 자격요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p> <p>○ 관련분야(경력)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일반진료, 보건교육 등 관련 경력</p>
협치·소통 [시민소통관]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민·관 협치 (협력, 거버넌스), 주민참여 활성화, 대외협력 등 민·관 협치 분야 경력</p>
산업안전관리 [행정과]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필수 자격요건 : 다음 각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p>○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산업안전관리 분야 경력</p>
사회조사분석 및 공모사업 운영 [도시청 결과]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대학, 연구소 포함) 등에서 사회(통계) 조사 분석 또는 공모사업 운영 분야 업무 경력</p> <p>○ 우대사항 :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보유자</p>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서 도시재생, 디자인 관련 경력</p> <p>○ 관련분야(학력) :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계획·개발, 디자인 등 관련 학과</p>

직무분야	자격 기준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산업보건관리 [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자격요건 : 다음 각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산업안전보건 및 의료 분야 관련 경력 ○ 우대사항 : 산업간호사 자격 소지자
농기계관리 [기술지원과]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또는 지게차운전기능사(3톤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등에서 농업, 농기계 관련 경력
메이커스페이스운영 [서부도서관]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3D프린터 활용 관련 업무 또는 메이커스페이스 업무 경력 ○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3D프린터 운용기능사 또는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단속 [대중교통과]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교통사무, 행정사무 또는 단속업무 분야 경력

직무분야	자격 기준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과]	<p>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필수 자격요건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평생교육법」제2조의제2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p>
영양사 [처인구보건소]	<p>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필수 자격요건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국·공립 및 사립학교, 의료기관 포함) 등에서 「국민영양관리법」제17조에서 정하는 영양사 업무 경력</p>
운동처방사 [기흥구보건소]	<p>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필수 자격요건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체 및 대학 부설연구기관 포함) 등에서 신체활동, 운동처방, 보건교육 관련 경력 ○ 우대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p>
간호사 [기흥구보건소]	<p>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필수 자격요건 :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포함) 등에서 간호사 분야 경력</p>

* 경력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 경력은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 경력기간은 **주 40시간 근무기준**(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시간 비례 계산)
- * 모든 경력은 군대 등 의무복무 경력 제외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3. 시험방법

-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구술에 의한 문답식으로 검정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4. 채용일정 및 원서접수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03. 31.(목) ~ 04. 11.(월)	'22. 04. 07.(목) ~ 04. 11.(월)	'22. 04. 18.(월) 전·후	'22. 04. 21.(목) ~ 04. 25.(월)	'22. 04. 28.(목) 전·후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16:30 등)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2년 제○○회 용인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종합민원상담창구(시청 1층)
 - * 용인시청(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5.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① 응시원서 1부(붙임1/필수)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 **1만원** : 관리의사, 일반의사
 - * **7천원** : 협치·소통, 산업안전관리, 사회조사분석 및 공모사업운영, 도시재생
 - * **5천원** : 산업보건관리, 농기계관리, 메이커스페이스운영, 평생교육사, 화물자동차불법행위단속,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면제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② 이력서 1부(붙임2/필수)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3/필수)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4/필수)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붙임5/필수)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붙임7/필수)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8/필수)

⑧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필수)

- 석사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증명서 모두 제출
- 고등학교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⑨ 경력(재직)증명서 (필수)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⑪ 자격증 사본(필수자격인 경우, 해당자에 한함)

⑫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제출
-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6. 보수 및 기타사항

○ **근무기간**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연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공무원 연금 등 연금 수급자는 반드시 연금 정지 여부 확인(공단에 문의)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 보험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약정 기간	연봉액		週당 근무시간
				하한액(기준액)	상한액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1년	<u>62,686천원</u>	-	40시간
일반의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명	1년	<u>47,015천원</u>	-	30시간
협치·소통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1년	<u>39,583천원</u>	55,732천원	35시간
산업안전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2명	1년	<u>39,583천원</u>	55,732천원	35시간
사회조사분석 및 공모사업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채용일~1년 <i>*연장불가</i>	<u>39,583천원</u>	55,732천원	35시간
도시재생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1명	1년	<u>39,583천원</u>	55,732천원	35시간
산업보건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u>34,877천원</u>	48,893천원	35시간
농기계관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채용일~1년 <i>*연장불가</i>	<u>34,877천원</u>	48,893천원	35시간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u>34,877천원</u>	48,893천원	35시간
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u>34,877천원</u>	48,893천원	35시간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1명	1년	<u>34,877천원</u>	48,893천원	35시간
영양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1년	<u>25,814천원</u>	43,052천원	35시간
운동처방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1년	<u>25,814천원</u>	43,052천원	35시간
간호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명	1년	<u>25,814천원</u>	43,052천원	35시간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http://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인사관리과 인재채용팀 (031-324-2113)
----------------	----------------------------